홍 성 구
(bbg@hknu.ac.kr)
한경대학교 농생대 시스템공학부 교수

Q : 에너지목표관리제

A : 에너지목표관리제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 대형건물에 대하여 정부와 협의해 에너지 사용 목표를 미리 정하고, 달성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에너지목표관리제는 정부와 기업이 에너지사용량 또는 원단위목표를 정하고, 이행계획 및 관리체계 등을 통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표 달성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을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반대로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패널티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관리업체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관리업체지정 에너지 소비량 기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9조 1항 1호 관련)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총량을 이용한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500 Terajoules 이상,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350 Terajoules 이상,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200 Terajoules 이상이다. 관리업체지정 사업장 에너지 소비량 기준(저탄소 녹색성장 기분법 29조 1항 2호 관련)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총량을 이용한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100 Terajoules 이상,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90 Terajoules 이상,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80 Terajoules 이상이다. 목표한 절감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문헌 : 에코시안

Q : 탄소세(Carbon Tax)

A : 대표적인 온실기체인 탄산가스의 방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뜻에서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이다.

탄소세의 효과는 첫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는 화석연료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화석연료 이용을 억제하고, 둘째로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하여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억제하는 데 있다. 그러나 탄소세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90년 1월)가 처음 도입한데 이어, 스웨덴(91년 1월)·네덜란드(90년 2월)·덴마크(92년 5월)·노르웨이(91년 1월) 등 북유럽 몇몇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산업화된 모든 나라가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세를 실시하면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지구온난화 방지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범지구적 문제여서 국제적 공조체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도 아직까지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Q : 국가 보고서 (National Communication)

A : 기후변화협약상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온실가스

통계량,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있는데(제 4.1조 및 12조), 선진국들은 협약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있으며, 개도국들은 협약 발효 후 3년 이내에 또는 선진국의 재정, 기술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출처 :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

Q : 기후 변화 협약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A : 우리 나라는 '93년 12월에 47번째로 동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Non Annex I 국가로 분류되어 국가보고서 제출 등 협약상 일반적 의무만 수행하면 되나, OECD 가입이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우리 나라가 조속히 자발적으로 Annex I 국가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

Q :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A : 사람의 활동이나 상품을 생산, 소비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_2)의 총량을 말한다.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이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연료, 전기, 용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Q : 탄소포인트제

A : 가정에서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특별 포인트로 제공해주는 것. 정부나 지자체가 전기, 가스를 아껴쓰거나 저탄소 제품을 구입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는 개인과 가정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반대급부로 제공한다.

자료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Q : BAU(배출전망치, Business as usual)

A : BAU는 특별한 조치(저탄소녹색성장 등)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 즉, 국민경제의 통상적 성장관행을 전제로 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추계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감축목표치인 2020년 BAU 대비 30% 감축목표는 UNFCCC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감축범위(BAU 대비 13~30%)의 최고수준으로 볼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연구보고서